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시정 요구

제 목 ○○○○○○○회 운영 보조금 정산 부적정

기 관 명 울산광역시

훈계대상자 울산광역시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6. 7. 13.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울산광역시 ○○○○○과에서 ○○○○○○○○○ 운영 보조금 업무를 처리한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제82호)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검사 시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또는 사용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교부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는 보조금 정산검사 시 보조사업자가 원칙에 따라 카드를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고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또는 사용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고, 증빙서류가 누락이 되어 있을 때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고 증빙이 되지 않는 지출에 대해서 소명을 들어 부당집행인지를 확인하여 만약 부당 집행일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여야 했다.

울산광역시(○○○○과)에서는 2017년 ○○○○○○○회 및 ○○○○○○○부 운영 지원을 위해 보조사업자인 ○○○○○○○○에 보조금¹⁾을 지원하였고, 보조사업자로부터 2017년 ○○○○○○○회 보조금(1~2분기)²⁾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완료하였다.

하지만 정산검사를 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시 카드 사용이 원칙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필수 증빙서류를 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 검사 시 증빙자료 보완 요구를 하지 않고 정상 집행을 것으로 정산검사 하였다.

이에 정부합동감사 시 해당 미첨부 증빙서류에 대한 보완 요청 및 사유를 2018. 3. 5. 요구하였고 실무담당자는 [표1]과 같이 보완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 계좌이체 집행을 하였으나 증빙 서류 미흡

1) 민간경상보조금 11,235,488,000원(전문체육운영 7,311,388,000원, 시청운동경기부육성 3,924,100,000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942,839,000원, ○○○○운영비 1,942,839,000원)

2) 감사일 현재 2분기까지의 보조금(9,189,100,650원) 정산 완료

지출일자	집행내용	금 액	지급처	기존 증빙자료	보완 내용
2017.3.17.	본회○○팀 ○○복 구입	2,640,000원	○○	X	증빙 불가
2017.5.31.	제00회 전국○○체육대회 ○○단복 구입	15,930,000원	○○○○○○	(종이)세금계산서	증빙 불가
2017.6.5.	○○팀 장비 구입	6,875,000원	○○○○○○○	X	전자세금계산서 (감사요구 후 발급)
2017.6.19.	근대5종 훈련장비 구입	4,200,000원	○○○○○	X	전자세금계산서 (감사 요구후 발급)

실무담당자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한 사유로 업체가 타 지역에 소재하여 카드 결제를 하지 않았고, 울산 소재 업체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담당자의 업무 편의성 때문에 카드 결제를 하지 않았다고 소명하였다.

하지만 위 2개의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불가피한 사유³⁾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예외적 허용에 해당하는 사유⁴⁾에도 해당되지 않아 부당한 보조금 집행으로 지적하였어야 했다.

더구나 카드로 결제를 하지 않은 업체 중 하나인 ○○스포츠의 경우, 2017. 2. 28.에 ○○○○○○○대회 선수단복으로 롱코트 16벌을 동일업체인 ○○스포츠에서 구매할 때에는 구매대금 2,880,000원을 카드로 결제하기도 하였다.

보완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7. 3. 17. 본회 사격팀 사격복 구입건과 2017. 5. 31. 제○○회 ○○○○○○○○○회 임원단복 구입건의 증빙자료로 제출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업체가 작성한 서류로서 해당 서류가 당시 세무서에 신고할 때 제출된 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정상적인 구매가 이루어졌는지를 증빙할 수 없었다.

3)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4)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또는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

이후 실무담당자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홈텍스 상에서 확인되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기재된 세금계산서 발급분 총 금액과 기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세금계산서 발급분 총 금액이 일치한다는 자료였다.

하지만 이 보완자료는 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분 총액(○○스포츠 103,260,908원/○○ 60,935,420원)만을 확인해줄 뿐 정작 (종이)세금계산서의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의 매출처별 명세 내역을 증빙하는 자료는 아니었다.

또한 사업담당자가 보완서류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국세청의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조회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감사기간 중 보완 요청을 한 후 발급받아 제출한 것이었다.

[표2] 보완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결과

지출일자	집행내용	금 액	지급처	발급일자	감사기간 중 자료보완 요청일/제출일
2017.6.5.	복싱팅 장비 구입	6,875,000원	○○○스포츠	2018.3.7.	2018.3.5./3.7
2017.6.19.	근대5종 훈련장비 구입	4,200,000원	○○산업	2017.6.15.(420,000원) 2018.3.6.(3,780,000원)	2018.3.5./3.6

그 중 2017. 6. 19. ○○산업에 지급한 근대5종 훈련장비 구입 건(420만원)의 경우 구매 당시에는 42만원으로만 전자세금서를 발급하였다가 감사기간 중 보완 요청을 한 후 2018. 3. 6.에 420만원과 42만원의 차액인 3,780,000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추가 발급한 것이었다.

더구나 감사기간 중인 2018년 3월에 새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가 각각 2017. 6. 8.과 2017. 6. 16.로 기재되어 있어 당시 정상적으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로 보이게끔 허위로 작성되었고, 보완서류 제출 시에 해당 전자

세금계산서가 미첨부된 사유를 실수로 인해 첨부 누락한 것이라고 하는 등 해당 전자세금계산서가 새로 작성·발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가 해당 내용을 지적한 후에야 새로 작성·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실무담당자는 추후 작성·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당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처럼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 당시에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서류 보완요구로 인해 확인하던 중 해당 업체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잘못하거나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여 새로 작성·발급한 것이라고 소명하였고, 당시 물품 구매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해당 구매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카드 결제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점, 해당 구매의 증빙서류를 정산보고 당시 누락한 점, 증빙서류를 위조가 쉬운 (종이)세금계산서로 제출하거나 당시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점, 이를 밝히지 않고 당시 정상적으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인 것처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시 물품 구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무담당자는 증빙서류의 보완 및 소명 없이 정상 집행되었다고 부적정하게 정산 검사하였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위 사업에 대하여 다시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 사안별로 보조금 환수, 보조사업자 제재, 수사의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